

#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7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정진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우, 김기대, 김달호,  
김수규, 김재형, 김정태,  
김제리, 김평남, 김혜련,  
문장길, 박기열, 박기재,  
박상구, 박순규, 성흠제,  
송아량, 송재혁, 양민규,  
오현정, 유 용, 이광호,  
이상훈, 이영실, 이정인,  
임종국, 전석기, 최 선,  
최웅식, 최정순, 한기영,  
황규복, 황인구 의원(32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20년 12월 9일 「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함에 따라 '환경보전 계획'이 '환경계획'으로 명칭이 변경되므로 이에 따라 조례에 '환경보전 계획'을 '환경계획'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'환경보전 계획'을 '환경계획'으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18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보건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##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환경보전계획 등”을 “환경계획 등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환경보전계획)”을 “(환경계획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환경보전계획(이하 “환경보전계획”)”을 “환경계획(이하 “환경계획”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“환경보전 계획”을 각각 “환경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환경보전 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장 환경보전계획 등</u></p> <p>제11조(<u>환경보전계획</u>) ① 서울특별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환 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<u>환 경보전계획</u>(이하 “<u>환경보전계획</u>” 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.</p> <p>② <u>환경보전 계획</u>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<u>환경보전 계획</u>을 수립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시장은 <u>환경보전계획</u>을 수립할 때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녹색 서울시민위원회,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.</p> <p>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<u>환경보전 계획</u>에</p>	<p><u>제2장 환경계획 등</u></p> <p>제11조(<u>환경계획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경 계획</u>(이하 “<u>환경계획</u>”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환경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환경계획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 <u>환경계획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환경계획</u>-----</p>

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2(환경보전에 관한 자문)

① (생략)

②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3. (생략)

-----.

제26조의2(환경보전에 관한 자문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

-----.

1. ----- 환경계획-

-----

--

2. 3. (현행과 같음)